■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[별지 제6호 서식] <신설 2019. 7. 1.>

산소치료처방전

[ ] 재발급

보장기관명(기호)	

진료받은 사람	성명	주민(외국인)등록번호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주소	
진료과목		
상병	상병명	상병코드

산소처방 지시사항 (1일에)	안정 시	L/분	시간
	운동 시	L/분	시간
	취침 시	L/분	시간
동맥혈 가스검사 결과	[ ] 산소분압(Pa02)이 55㎜Hg 이하 [ ] 산소포화도(Sa02)가 88% 이하		
	[ ] 산소분압(Pa02)이 56~59㎜Hg [ ] 산소포화도(Sa02)가 89% 이상	[ ]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리트 55% 초과) [ ]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[ ] 폐동맥고혈압	
산소포화도 검사결과	[ ] 산소포화도가 88% 이하		
	[ ] 산소포화도가 89% 이상	[ ]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리트 55% 초과) [ ]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[ ] 폐동맥고혈압	
호흡기장애 정도	1. 심한 정도 2. 심하지 않은 정도		
산소치료 처방기간	. . . ~ . . . 까지		
처방전 사용기간	※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		

년 월 일

의료급여기관 명칭 (의료급여기관 직인)

의료급여기관 기호

담당의사 (서명 또는 인) 면허번호 제 호

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

유의사항

1.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2.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.
3.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·결핵과·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.
4.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.
5.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"재발급"에 [✔]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.
6.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, 서비스 내용,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c.or.kr)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.
7. 2019년 7월 1일전 호흡기장애 1,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]